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1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재무국의 신설로 이원화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.

주요골자

- 징수관을 명시(내무국장으로)

근거법령 :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2항

첨 부

1.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관련법규 발췌 1부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제2조의”를 “제3조의”로 하고, 이 경우 뒤에 “징수관은 내무국장으로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7조 (특별회계의설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다. <u>이 경우</u> 본임징수관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, 수입금출납원은 새마을계장으로 한다.</p>	<p>제 7조 (특별회계의설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 3조의</u> ----- <u>이</u> <u>경우</u> 징수관은 <u>내무국장</u>으로, ----- -----</p>